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52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 어기구 · 박희승 · 이개호

박홍배 • 박수현 • 조인철

김종민 · 복기왕 · 소병훈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 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그런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꿀벌이 꽃가루 등의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조성가능성을 고려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

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 원식물(목본식물에 한정한다)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의 조성 가능 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	③
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	
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	
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	
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u><후단</u>	<u>이 경우 다</u>
<u>신설></u>	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u><신 설></u>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u><신 설></u>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u><신 설></u>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
	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
	<u>반</u>
<u><신 설></u>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목본식물에 한
	정한다) 확충을 위한 특화단
	지의 조성 가능성